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1차)

지혜롭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가온교육

(14996)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

[담당교사 364-1700] 교무실 364-1700~1, 행정실 364-1770~3

학부모 가정 건강 행복 기원
學父母님의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함께하시길 祈願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 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시흥가온초등학교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제공자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과태로 통보조치)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처

- 시흥교육지원청 : www.goesh.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시흥가온초등학교 교무실 (031) 364-1700

2024. 3. 22.

시 흥 가 온 초 등 학 교 장

❖ <http://gaon.es.kr> ↗ 가정통신문 ❖